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철도보호지구 내 타인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출입·사용 근거 마련〉

■ 김은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490호)

2025. 12.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임 종 수

목 차

□ 김은혜의원 대표발의(2214490)	1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철도보호지구 내 타인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출입·사용 근거 마련 (안 제45조의2 신설 등)	3

□ 김은혜의원 대표발의(2214490)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은혜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11. 24.
3. 회 부 일 : 2025. 11. 2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철도경계선으로부터 일정 범위 내의 지역을 철도보호지구로 정하고 그 안에서 토지 형질변경, 건축물 축조, 구조물 설치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철도보호지구는 철도부지뿐만 아니라 사유지도 포함하고 있어 철도시설관리자 등이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타인의 토지나 건물을 출입·사용할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법은 타인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출입·사용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긴급한 안전조치 등이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철도보호지구 내 타인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출입·사용 근거를 마련하고,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

- 방해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철도 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 및 안전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 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철도보호지구 내 타인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출입·사용 근거 마련(안 제 45조의2 신설 등)

현행법¹⁾은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을 말함)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경우를 철도보호지구로 정하고 철도보호지구 내에서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토지 형질변경 및 굴착, 건축물의 축조, 토석 등의 채취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철도보호지구에는 국가 소유의 철도부지 뿐만 아니라 사유지도 포함되어 있

1)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을 말한다)으로부터 30미터 이내[「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노면전차(이하 “노면전차”라 한다)의 경우에는 10미터 이내]의 지역(이하 “철도보호지구”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掘鑿)
 2. 토석, 자갈 및 모래의 채취
 3. 건축물의 신축·개축(改築)·증축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
 4. 나무의 식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철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② 노면전차 철도보호지구의 바깥쪽 경계선으로부터 2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굴착, 인공구조물의 설치 등 철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 17.>
-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를 하는 자에게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령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토지, 나무, 시설,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1. 시설등이 시야에 장애를 주면 그 장애물을 제거할 것
 2. 시설등이 붕괴하여 철도에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으면 그 위해를 제거하고 필요하면 방지지설을 할 것
 3. 철도에 토사 등이 쌓이거나 쌓일 우려가 있으면 그 토사 등을 제거하거나 방지지설을 할 것
- ⑤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해당 행위 금지·제한 또는 조치 명령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는데 철도보호지구 내 타인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출입·사용에 대한 근거는 없는 상황임.

개정안은 철도운영자등이 선로에 대한 조사·측량 또는 철도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나 건물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죽목·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도록 하며,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제45조의2(철도보호지구 내 토지 및 건물의 출입과 사용 등) ① 철도운영자등 또는 철도운영자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철도보호지구 안에서 선로에 대한 조사·측량 또는 철도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나 건물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죽목·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나 건물에 출입하려는 자는 출입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그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나 관리인에게

현행	개정안
	<u>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제거하려는 자는 토지를 사용하려는 날이나 장애물을 변경·제거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나 관리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나 관리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여 토지 출입 또는 장애물의 변경·제거 사실을 알릴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u> <u>③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는 사후에 통지할 수 있다.</u> <u>④ 일출 전·일몰 후에는 그 토지나 건축물의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 또는 울타리나 담장으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 또는 타인의 건물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u> <u>⑤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나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u> <u>⑥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나 건물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u>

현행	개정안
제46조(손실보상)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철도운영자등은 제4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행위의 금지·제한 또는 조치 <u>명령</u>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82조(과태료) ① ~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u><신설></u> 2. ~ 4. (생략) ⑤ · ⑥ (생략)	<u>⑦ 제6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u> 제46조(손실보상) ① ----- ----- ----- -----<u>명령, 제45조의2에 따른 처분이나 제한으로</u>-----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82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1. (현행과 같음) <u>1의2. 제4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일시사용 또는 죽목·토석, 그 밖의 장애물의 변경이나 제거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람</u> 2. ~ 4. (현행과 같음) ⑤ · ⑥ (현행과 같음) 부칙 <u>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u>

가. 검토의견

현재 철도운영자 또는 철도시설관리자(이하 “철도운영자등”이라 함)²⁾가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철도보호지구 내 타인의 토지나 건물을 출입·사용하려는 경우, 현행법상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직접 토지소유주등³⁾의 동의를 받고 나서야 출입·사용할 수 있는데, 토지소유주등과의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해당 토지를 우회하여 진입하거나 대체출입문을 설치하는 등 비효율성이 야기되고, 협조를 구하기 어려운 긴급한 상황의 경우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조치가 적기에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한편,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⁴⁾에서는 철도의 건설사업 시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작성을 위한 조사, 측량 또는 철도건설사업을 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건설된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시에는 타인의 토지 출입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2) 「철도안전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②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이하 “철도운영자등”이라 한다)는 철도운영이나 철도시설관리를 할 때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철도안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나 관리인을 말함

4)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토지에의 출입 등)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작성을 위한 조사, 측량 또는 철도건설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1.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행위

2.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積置場), 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하는 행위

3. 나무·흙·돌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이에 개정안은 철도보호지구 내에서 철도운영자등이 선로에 대한 조사·측량 또는 철도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나 건물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죽목·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한 손실을 입은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도록 하려는 것⁵⁾으로, 철도 시설물에 대한 원활한 조사·유지보수 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철도사고 등 긴급한 상황 시 신속한 대응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먼저, 개정안은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하려는 경우, 출입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소유자등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토지의 일사사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제거 등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를

5)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를 하는 자에게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령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개정 2012. 12. 18., 2013. 3. 23., 2017. 1. 17.>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토지, 나무, 시설,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신설 2014. 5. 21., 2017. 1. 17.>

제46조(손실보상)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철도운영자등은 제45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행위의 금지·제한 또는 조치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해당 사실을 알리고 소유자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으나, 거소 불분명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통지 및 의견청취 의무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토지의 일시사용 또는 장애물 변경·제거 행위의 경우 토지의 출입행위보다 소유자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침해의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있는데⁶⁾, 개정안과 같이 거소 불분명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별도의 통지 및 의견조회 없이 철도운영자등의 판단에 따라 토지의 일시 사용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선로 조사 및 유지·보수 행위의 원활한 추진 필요성과 함께 개인의 사적 재산권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어 보임.

이와 관련하여 유사 입법례를 살펴보면,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타인의 토지 등에 대한 출입, 일시 사용 등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⁷⁾까지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토지의 일시 사용 및 장애물 변경

6) 한편 도로관리청 등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경우와 달리, 토지의 일시 사용 또는 장애물을 변경·제거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와 점유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출입행위보다 일시 사용 및 장애물 변경·제거행위가 토지소유자 또는 토지점유자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침해의 정도가 더 크기 때문이다.(국토교통부, 「도로법 해설」, 2022, p.396)

7) 이와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도 유사한 조항을 두고 있음.

제130조(토지에의 출입 등)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1. 도시·군계획·광역도시·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2.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및 제67조제4항에 따른 기반시설설치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3. 지가의 동향 및 토지거래의 상황에 관한 조사

4.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조사·측량 또는 시행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

· 제거 등을 하려는 경우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도록 하되, 거소 불분명 또는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하천법」 8)에서도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음.

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출입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 다만, 행정청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2012. 2. 1.>

- ③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사용하거나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④ 제3항의 경우 토지나 장애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여 그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청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행정청이 아닌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미리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4. 14.>
-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토지를 사용하려는 날이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그 토지나 장애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알려야 한다.
- ⑥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그 토지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나 담장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 ⑦ 토지의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하지 못한다.
- ⑧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허가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⑨ 제8항에 따른 증표와 허가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8) 「하천법」

제75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하천관리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하천관리청으로부터 명령이나 위임·위탁을 받은 자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를 대행하는 자는 하천공사, 하천에 관한 조사·측량, 그 밖에 하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특별한 용도로 이용되지 아니하고 있는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죽목·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 ②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출입할 날의 3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나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③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하거나 죽목·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미리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나 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나 관리인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거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④일출 전·일몰 후에는 그 토지의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 또는 울타리나 담장으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⑥제5항에 따른 증표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는 단순 출입과 달리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제거하는 경우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공익적 목적의 사업이 과도하게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거소 불분명 등의 경우에 한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특히, 이와 관련하여 개정안 제45조의2제3항에서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일시 사용 등을 사후에 통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선로 유지·보수 등의 신속한 수행을 위한 근거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거소 불분명 등의 사유에 대해 토지의 일시 사용 등의 행위를 위한 통지 및 의견수렴 절차를 배제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⁹⁾

다음으로, 개정안 제45조의2제5항에서는 토지소유자등이 정당한 사유

9) 한편, 「도로법」의 경우 개정안과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음.

「도로법」

제81조(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 ①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명령이나 위임을 받은 자는 도로공사, 도로에 대한 조사·측량 또는 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고, 특히 필요하면 입목·죽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출입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와 점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제거하려는 자는 토지를 사용하려는 날이나 장애물을 변경·제거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그 소유자와 점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소유자와 점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여 토지 출입 또는 장애물의 변경·제거 사실을 알릴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는 해당 토지 점유자의 승낙 없이 그 주거(住居)나 경계표·담 등으로 둘러싸인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④ 토지의 소유자 및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하지 못한다.

⑤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없이 토지 출입행위 등을 방해하거나 거부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하천법」¹⁰⁾의 입법례를 따른 것으로 보이나, 유사 위반행위에 대하여 「도로법」에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처벌의 종류 및 적정 수준에 관해서는 유사 입법례를 감안한 논의가 필요하겠음.

< 토지에의 출입 등의 행위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에 대한 처벌 사례 >

구분	처벌대상 및 처벌수준
「도로법」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처분 또는 행위에 항거하거나 이를 방해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하천법」	토지의 출입·일시사용 또는 죽목·토석, 그 밖의 장애물의 변경이나 제거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행위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0) 「하천법」

제98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75조제1항에 따른 토지의 출입·일시사용 또는 죽목·토석, 그 밖의 장애물의 변경이나 제거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나. 국토교통부 의견

철도운영자 등이 철도보호지구 내에서 철도시설 유지관리 등을 위해 타인의 토지·건물에 출입 가능토록 한 개정안 취지에 동감함.

철도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안전확보를 위해 타인의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에 동감함.

문 의 처
02)6788-5582

참고1

철도보호지구의 범위 (자료 : 국가철도공단)

